

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(김경영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313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4월 02일
발 의 자 : 김경영, 권수정, 김경우,
김제리, 김화숙, 박기재,
이광호, 이영실, 이정인,
조상호 의원(10명)

1. 제안이유

- 2020년 11월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여성역사공유공간 “서울여담재”를 서울시 여성관련시설로 규정하고, 그 기능을 명시하고자 함.
- 또한 조문의 형식 및 맞춤법 등을 정비하여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여성관련시설로 ‘서울여담재’를 규정함 (안 제4조제6호 신설)
- 나. 서울여담재의 주요기능을 규정함 (안 제12조2 및 별표 5의2 신설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」제29조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, 구조문대비표 별첨

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7호(종전의 제6호) 중 “제5호”를 “제6호”로 한다.

6. 서울여담재 : 여성사 자료 발굴·보존·연구 및 공유, 교육·문화·전시 프로그램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
제6조제1항 중 “별표 2과”를 “별표 2와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별표 3와”를 “별표 3과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별표 4과”를 “별표 4와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지방자치단체”를 “시”로 한다.

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2(서울여담재 명칭 및 기능 등) ① 제4조제6호에 따른 서울여담재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5의2와 같다.

② 서울여담재가 수행하는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여성사 자료 발굴·보존·연구 및 공유
2. 여성사 자료관 운영
3. 교육·문화·전시 프로그램 운영
4. 지역주민 참여 및 지역사회 활성화 사업

제25조 중 “제6호”를 “제7호”로 한다.

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5의2]

서울여담재 명칭 및 위치(제12조의2 관련)

명 칭	위 치
서울여담재	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산길 202-15(창신동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여성관련시설의 종류)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설치·운영하는 여성관련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6. 그 밖에 제1호부터 <u>제5호</u>까지 및 제1의2호와 유사한 시설로서 여성의 사회참여 및 성평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</p> <p>제6조(여성공예센터의 명칭 및 기능 등) ① 제4조제2호에 따른 여성공예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<u>별표 2</u>과 같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7조(여성능력개발원의 명칭 및 기능 등) ① 제4조제3호에 따른 여성능력개발원의 명칭 및 위치는 <u>별표 3</u>와 같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8조(여성발전센터의 명칭 및 기</p>	<p>제4조(여성관련시설의 종류) 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<u>서울여담채 : 여성사 자료 발굴·보존·연구 및 공유, 교육·문화·전시 프로그램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</u></p> <p>7. ----- <u>제6호</u>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제6조(여성공예센터의 명칭 및 기능 등) ① ----- ----- <u>별표 2</u>와 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여성능력개발원의 명칭 및 기능 등) ① ----- ----- -- <u>별표 3</u>과 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8조(여성발전센터의 명칭 및 기</p>

능 등) ① 제4조제4호에 따른 여성발전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4과 같다.

② (생략)

제10조(지정 기준 및 지정의 취소 등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·단체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려면 시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.

②·③ (생략)

<신설>

제25조(관리·운영의 위탁 등) 시장은 제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의2호에 해당하는 여성관련시설의 관리·운영에 관

능 등) ① -----

별표 4와 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지정 기준 및 지정의 취소 등) ① ----- 시-----
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12조의2(서울여담재 명칭 및 기능 등) ① 제4조제6호에 따른 서울여담재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5의2와 같다.

② 서울여담재가 수행하는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여성사 자료 발굴·보존·연구 및 공유
2. 여성사 자료관 운영
3. 교육·문화·전시 프로그램 운영
4. 지역주민 참여 및 지역사회 활성화 사업

제25조(관리·운영의 위탁 등) ----- 제7호-----

하여 그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
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-----.